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77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이해민 · 황운하 · 서왕진
김선민 · 신장식 · 김우영
정춘생 · 박은정 · 민형배
손명수 · 김준형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전화(인터넷전화를 포함한다), 이동통신, 인터넷 및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u>제59조의4제9항</u> 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u>제59조의4제10항</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전화(인터넷전화를 포함한다), 이동통신, 인터넷 및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의</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
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
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5항-----

[illegible]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 ⑧ (생략)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

-----.

1. -----

-제7항-----

2. (현행과 같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